

호명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 사 개 요

 감사기간 : 2014. 1. 21. ~ 1. 24.(4일간)

 감사범위 : 2012. 2. 13.이후 업무전반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 사 결 과

- 행정상 조치
 - 본 처분 15건(시정 7, 주의 8)
- 재정상 조치
 - 4건 1,056,000원 (회수 3건 1,050,000, 추징 1건 6,000)

지적사항 요약

1. 예산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39호) 신용카드 사용 절차에 따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48호 서식)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주의 계약, 청구인 날인 및 검수 등을 확인하여 집행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아동급식 지원물품 구입 외 5건에서 같은 규칙 별표 제45호 서식(지출결의서)을 사용하였으며, 계약, 청구인의 날인 및 물품검수조서를 누락하는 등 관계규정에 의한 계약 및 회계 절차 소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비밀 및 대외비 문서관리기록부 재분류 부적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4조(파기) 제2항 비밀의 파기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보관책임자) 제3항제3호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같은 규칙 제30조(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 제2항 비밀을 재분류 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삭제(비밀등급에서 사본번호까지) 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2012년 8건, 2013년 5건 등 13건의 비밀문서에 대해 재분류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3. 차량운행 관리 부적정

- 예천군공용차량관리 제24조(유류사용 정산) 및 제25조(기록관리)에 의하면 차량배차 시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하며, 차량 보유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가 되고 있음에도 2012년~2013년간 19건의 차량운행일지와 유류수불부, 유류불출증의 처리일자가 불일치하며, 차량운행일지 등 작성 누락 2건, 2012년 다목적 차량운행일지 미비치 등 차량운행 관리 소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4. 근무시간 미준수

- 예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당직의 구분)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일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지방■■■*급 ○○○ 외 1명은 2012.6.30.부터 2012. 11. 11까지 출근 및 퇴근 시간 등 미준수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5. 당면업무 추진 소홀

- 총무과-15682(2012.9.24.)호 「2012년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계획 통보」에 의하면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통보함에도 2012년 추석맞이 종합대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 추진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6.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불입 지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 납입)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나 2012~2013년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수입금 1,933,500원을 익일을 초과하여 납입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7. 공사비 미 정산 과다지급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설계 기준철,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이 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주)와 계약한 △△△ 농로포장 공사에 대하여 비닐 미설치 및 레미콘 소운반 49m³을 미이행 하였음에도 이를 설계변경이나 정산 조치없이 준공급을 지급하여 도금액 기준으로 350,000원(제경비포함)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 35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8. 공사비 미 정산 과다지급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설계기준철,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이 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주) ○○○와 계약한 ▽▽▽ 배수로 설치공사에 반영된 플룸관 소운반 25본을 미이행 하였음에도 이를 설계변경이나 정산 조치 없이 준공급을 지급하여 도급액기준으로 130,000원(제경비포함)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 13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9. 공사비 미 정산 과다지급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설계기준철,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이 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주) ○○○와 계약한 □□□ 배수로 정비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된 개거설치(0.8*0.8)를 미설치 하였음에도 이를 설계변경이나 정산 조치없이 준공급을 지급하여 도급액기준으로 570,000원(제경비포함)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공사비 57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0.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재판정 통보는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최소 1개월전에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고, 기한내 미이행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 하여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재판정 촉구 기한내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여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장애인 재판정 및 촉구 통보를 하였음에도 기한내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 않은 자에게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1. 농지원부 변동사항 처리 소홀

- 농지법 제49조제3항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외 46건에 대한 변동사항 정리 소홀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2. 농지원부 등록신청 업무 부적정

- 농지법시행이전인 1996년 1월1일 이전에 소유한 농지는 개인간의 임대차가 가능하나, 1996년 이후에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2년 ~ 2013년까지 ○○○외 4건을 농지원부 등록신청서상의 농지를 개인간의 임대차계약서로 농지원부에 등록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3. 농지전용 변경신고 등록면허세 미부과

- 지방세법 제24조에는 등록을 하는자, 면허를 받는자(변경면허를 받는자를 포함한다)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 농지전용 변경신고 수리를 하면서 신고수리 조건에 명시하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부과 누락
- ▶ 미부과된 등록면허세 6,000원에 대하여 추징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시 증빙서류 미 구비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의거 별지 제68호 서식(신고서)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유서로 대체 가능) 등을 구비하여 사용폐지신고 하여야 하나, 민원신청 26건에 대하여 구비서류(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등)를 첨부하지 않음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5.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소홀

- 영농안전장비지원사업 시행지침 【친환경농업과-1725호(2013.1.28.)】에 따라 배정받은 물량을 농가에 배부 후 결과보고 및 농가공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3년 농약안전장비를 60세트 배정 받았으나 배정 받은 물량을 신청농가에 배부하지 않음
 - ▶ 미배부된 농약안전장비 60세트를 신청농가에 배부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